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PART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매뉴얼

I. 서비스 개요	2
1 근 거	2
2 대 상(이용기관)	2
3 기 간	2
④ 서비스 제공자	2
II. 운용기준 (인터넷언론사)	3
1 실명확인 대상 인터넷언론사	3
2 실명확인 조치 대상 게시판·대화방 등	3
3 실명인증 표시 없는 정보 등의 자진삭제	3
④ 과태료 부과	4
Ⅲ.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절차	6
1 사전 준비단계	6
2 실명확인 시험운영단계	
3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서비스 실시단계	
④ 사후관리단계	7

Ⅳ. 기술연계매뉴얼	8
V.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문의처	8
VI. 공직선거법	9



PART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매뉴얼

I. 서비스 개요

1. 근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2. 대상(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의무), 정당·후보자(임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
- **3.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3월 29일 ~ 4월 10일 13일간)

4. 서비스 제공자

- 행정안전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 ※ 행정안전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 회는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자 중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절차 및 기술연계매뉴얼을 중심으로 안내함.

II. 운용기준 (인터넷언론사)

1. 실명확인 대상 인터넷언론사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터넷언론사

※ 인터넷언론사가 관리 · 운영하지 아니하는 카페, 블로그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실명확인 조치 대상 게시판·대화방 등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기사 댓글란 포함) 등

3. 『실명인증』 표시 없는 정보 등의 자진삭제

인터넷언론사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표시가 없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 삭제조치 ※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PART

4. 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부과대상 및 기준

(1)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 법정 상한액 : 1,000만원
- 이 행 기 한 :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 부 과 기 준
 -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50만원
- (2) 『실명인증』표시가 없는 정보 등을 삭제하지 아니한 때
 - 법정 상한액 : 300만원
 - 이 행 기 한 : 삭제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부 과 기 준
 - 삭제명령을 받고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20만원



4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매뉴얼

• 신청 대상정보 및 제출방법

1. 인터넷언론사의 신청 대상정보(기술연계매뉴얼 참조)

- 기관기본정보 : 기관코드, 기관명, 기관분류, 기관대표,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URL
- 추가정보 : 담당자정보, 기관 IP주소, 서비스대상 게시판등 URL. 인증결과 전송페이지 URL

2. 신청서 제출방법

● 인터넷언론사 : 신청서(엑셀)에 따라 대상정보를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통보)

●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후보자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제출

M.

• 그 밖의 관련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www.nec.go.kr) 게시

PART

Ⅲ.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절차

1. 사전 준비단계

- ③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신청 및 정보등록
 -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 신청서 제출(이용기관)
 - 인터넷언론사 : 인터넷언론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 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후보자 :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 ※ 실명확인 서비스 작업일정상 인터넷언론사는 가급적 2월 20일까지 해당 시·도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및 시스템 연계조치 등을 하기 바람.
- 이용기관의 정보등록(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용기관의 대상정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정보를 해당 공직선거실명
 확인지원시스템에 등록

2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조치

(이용기관에서 기술연계매뉴얼 참조하여 3월 22일까지 조치)

-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접속, 서비스 호출, 인증표시 등을 위한 관련 S/W 보완
- 이용기관 자체 연계 테스트
 일시적 기술연계 지원요청 증가에 따른 기술지원 지연 등을 대비하여 이용기관별 자체
 연계 테스트 병행
- ③ 이용기관 추가 및 정보등록(3월 23일부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즉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서 제출
 - 행정안전부 및 이용기관은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조치

※ 이용기관 정보의 변경·삭제 등의 경우도 2와 동일

2. 실명확인 시험운영단계

- **1** 기 간: 3월 26일 ~ 3월 28일 (3일간)
- 2 대 상: 실명확인 게시판 및 대화방 등
- 3 내 용
- 실명확인대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호출, 실명인증처리 상태, 실명인증 표시 등 확인
- 4 방 법
 - 실명확인대상 게시판 등에 정보 등을 게시하는 사람의 실명자료(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처리 여부 확인
 - 정보 등 작성시 제목란에 「시험 테스트」 문안 입력 조치

※시험운영기간에는 테스트용 모의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3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실시단계(실시간 처리)

- **1** 실명확인 요청(이용기관 ⇒ 행정안전부) : 3월 29일 ~ 4월 10일
 - 정보 등을 게시한 사람의 실명(주민번호, 성명) 진위여부를 행정안전부에 확인요청
- 2 실명확인결과 통보(행정안전부 ⇒ 이용기관)
 - 행정안전부는 실명확인 요청 즉시 정보 등을 게시한 사람의 실명여부를 이용기관에 통보
- ④ 실명인증표시 부여(이용기관)
 - 이용기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실명확인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그 결과에 따라 게시된
 정보 등에 대하여 『실명인증』 표시

4 사후관리단계

- **1** 기술조치 제거 및 시스템 복구(이용기관) : 4월 11일 (수)부터
 -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서비스 이용관련 기술조치 제거
- 2 실명인증결과 보관(행정안전부): 선거일 후 6월까지

PART

八 중앙선거괌리위원회 🛛 🛞 행정안전부

Ⅳ. 기술연계 매뉴얼 : PART 2 참조



V.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문의처

- 시스템 운영 : 행정안전부 주민과
- 기 술 지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 김태형
- 전 화 번 호 : (02)502-6516
- 전 자 우 편 : cyber6516@korea.kr

VI.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 편집 ·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 · 논평 · 사진 · 방송 ·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년 8월 4일, 2009년 7월 31일〉

②~⑨ 생략

PART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년 2월 29일, 2010년 1월 25일〉
-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년 2월 29일〉
-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전문개정 2005년 8월 4일]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10년 1월 25일〉
 -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4년 3월 12일, 2005년 8월 4일, 2010년 1월 25일〉
 - 1. ~ 2. 생략
 -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⑨ 생략





PART 2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한

L

ㅣ.서비스 개요

14
14
14
14

14

l. 서비스 이용 절차	15
서비스 이용 절차도	15
2 세부이용 절차	16
3 서비스 이용 신청양식 작성 방법	19

Ⅲ. 선거실명확인지원 시스템 연계 방법 기술적 조치 사항 •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추가 또는 변경

-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연계
- 인증결과를 전송 받을 페이지 작성
- 2 시스템 연계시 고려 사항

V. 자체 연계 테스트 방법	31
 목적 	31
2 방법 및 내용	31
3 참고사항	31

PART 2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연계매뉴얼

I. 서비스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실명제 이행을 적극 지원
-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행안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

2. 서비스 이용대상

-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 ※ 중앙선관위에서 확정, 행안부로 통보한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에 한함
 정당 후보자는 임의사항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3. 서비스 기간

-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 ※ 서비스이용 대상기관의 자료신청 및 기술연계 조치기간 :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
- ⇒ 실명확인 서비스 기간에 임박하여 기술연계 지원요청이 증가할 경우 이용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미리 중앙선관위의 기술 조치 담당자를 통해 기술적 조치를 완료 하도록 함.

기술적 미 조치 이용기관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실명확인서비스 이용기관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이용신청서 제출 · 등록, 연계 테스트를 포함한 기술조치 등을 사전에 완료하기를 권장.

4. 서비스 내용

글 게시를 위한 실명확인 요청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글 게시자의 실명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결과 제공

Ⅱ. 서비스 이용 절차

1. 서비스 이용 절차도



* 점선부분은 실명확인 서비스 단계, 그 외는 사전준비(①, ②) 및 사후관리(③, ④)단계임. 실명인증호출 부문은 이용기관에서 아이프레임 또는 메인페이지 방식 중 선택 적용



🔨 중앙선거괌리위웜회 🛞 행정안전부



2 세부이용 절차

사전 준비 단계 : ① ②		
어ㅁ저친		업무처리 대상
입구 열지	기관분류	준비(조치)사항
1.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기관 확정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확정
2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중앙선관위	선거실명제 실시계획 서비스 이용방법 등 ※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
3. 서비스 이용기관 등록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중앙선관위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의 기본정보와 추가정보 – 기본정보 : 기관코드, 기관명, 기관분류, 기관대표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URL – 추가정보 : 기관IP주소, 서비스대상정보 (게시판/대화 방URL,게시판/대화방 구분), 인증결과 전송페이지 정보(인증결과를 전송받을 URL,구분), 시스템 담당자 정보 **신청양식(액셀)에 의거 기본정보 추가정보를 중앙 선관위에서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별로 취합 하여 행안부에 제출
4. 서비스 이용신청 및 기술적 조치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	선거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조치 - 관련 프로그램 보완 및 연계 테스트 (시스템 호출, 인증결과저장, 인증표시 등)



실명확인 서비스단계 : 아이프레임 방법

어ᄆ저扎	업무처리 대상			
비구 길 시	기관분류	준비(조치)사항		
1. 게시판 글작성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	지정된 게시판 등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 추가와 frame 할당 - 이용자ID의 실명인증 여부를 체크하여 실명인증 된 경우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 - '등록' 버튼 클릭시 실명인증 없이 글만 등록 되고 글에 "실명인증" 표시 안 함		
2. 실명인증요청 및 인증 처리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의 실명인증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성공 · 실패를 결정 〈성공시〉 ·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에서 이용기관의 등록된 결과 페이지에 고유키와 이름을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송 〈실패시〉 · 인증 실패시 실패 메시지를 출력 후 인증 요청화면 으로 되돌아감 · 이용자 입력실수를 고려, 3번의 인증시도 기회 제공		
3. 실명인증 결과 저장 및 실명인증 표시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실명인증결과를 전송받기 위한 결과 페이지 작성 - 결과 페이지의 기능은 실명인증 확인 고유키를 받아 이용자 ID와 매핑 저장 하고 이용자가 작성한 글 저장 - 이후 실명인증 받은 이용자는 해당 선거기간 동안은 인증 받을 필요 없음 - 인증받은 이용자가 남긴 글에는 "실명인증" 표시		



실명확인 서비스단계 : 메인페이지 방법					
어묘정원		업무처리 대상			
[[[[[[[[[[[[[[[[[[[기관분류	준비(조치)사항			
1. 게시판 글작성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	지정된 게시판 등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 추가 - 이용자ID의 실명인증 여부를 체크하여 실명인증 된 경우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 - '등록' 버튼 클릭시 실명인증 없이 글만 등록되고 글에 "실명인증" 표시 안 함			
2. 실명인증요청 및 인증 처리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의 실명인증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성공 · 실패를 결정 〈성공시〉 ·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에서 이용기관의 등록된 결과 페이지에 고유키와 이름을 URL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전송 〈실패시〉 · 인증 실패시 실패 메시지를 출력 후 인증 요청화면 으로 되돌아감 · 이용자 입력실수를 고려, 3번의 인증시도 기회 제공			
3. 실명인증 결과 저장 및 실명인증 표시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 · 후보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실명인증결과를 전송받기 위한 결과 페이지 작성 - 결과 페이지의 기능은 실명인증 확인 고유키를 받아 이용자 ID와 매핑 저장 하고 이용자가 작성한 글 저장 - 이후 실명인증 받은 이용자는 해당 선거기간 동안은 인증 받을 필요 없음 - 인증받은 이용자가 남긴 글에는 "실명인증" 표시			



18·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연계 매뉴얼

19

어므저차		업무처리 대상			
비구 길 시	기관분류	준비(조치)사항			
1. 기술적 조치 제거	이용기관 (인터넷언론사, 정당·후보자)	실명확인서비스 호출 및 인증정보 저장, 실명인증 표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거			
2. 실명인증 결과 보관	행정안전부	실명인증 관련 자료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 ※ 실명인증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만 하는 의무자는 행안부며, 이용기관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실명인증 관련 요청 (중앙선관위 ➡ 행안부) 	중앙선관위	공문서 요청 (행안부)			
4. 실명인증 관련 자료 제출 (행안부 ➡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관리하는 실명인증 자료 제출			

3 서비스이용 신청양식 작성 방법

● 신청서 용도 및 제출

사후관리단계 : ③④

⇒ 선거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넷언론사 정당 후보자 등의 정보를 등록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 (중앙선관위 → 행안부로 일괄제출)

	Alcrosoft E	xcel - 2010	1310 이름기관산정	저식과								1
1	28A	220 s	7100 11210 1	에 (1) 도구(1) 데	이티(민) 황(出)	도용답(日)					일문을 맞춰져	실시용
10	38		72100	3-319-1	- B E - 21	1 4 4 4	. E8	- 11	2 7 7 Z	# # # # #	5 · 12 213	R (R) III -
1	H3		& www.	abc.co.k#			and the second s		0	1		
Y .	A	8	C	0		F	G		4		<u></u> M	
1	70775	1 21 20 01	71 21 12 47	TT 15 6 1 2 11	1.72723	21 MIR 0		7 10	THE	· 전국 서북 · 전국		
B	000001	00%14	日日の日本人	2015	abc@abc.co.kr	10-222-1234	서출시 중구 영웅 100년	13. WWW. 22	1000 T740	12 192 deles	bc.co.kr 00-222	1235 123.1
4_		_										
5												
×	Microsoft B	Excel - 2010	0310 미용기관신형	MALINE	_							1
	244	800 I	17100 4180	44(D) 570 8	(4)E(D) \$2000	68930					일문을 입었다.	상사로
-	-	a za a	175 W1 X 114	S. 1 0	10 1 . 21	et 18 -5 -	N Brea	-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 de tratile
3	H3		6	abc.co.kr.	20 m 00		Cold Party	8."	1 A 4 4			-
-		N		P	0		8	8			U	
1		3	기관IP주소	Long a little				4,서비스	대상 정보	The state of the		
3	173.323.12	3,120	123 123 123 121	P 2 2 1 148	ADD CONTRACTOR	1915 UHL 42	NAB www.abc-	10 Br/chat01.14#	TE UNLYY Z	· · · · · · · · · · · · · · · · · · ·	계시전/대학합 0	에니 수소 3
-0-				·								
1	Microsoft I	Excel - 201	00310 이용기관신	· 참 서식 38								
1	RED	250	보기(신) 삽입(0)	MAND STO	010(E1(D) 3	W 5880	0					실문을 입었
	2.14	Cal -4 /2	3 13 IN X	A		- 21 21 14	AL BIAS		-11 -1	a 2/ 2/ # # 3	132 W 15	
	112			ww.abc.co.kt			N O D LAN		101-012			
1	V		W		×		Y	Z		AA	AB	AC
1						5.인증	결과 전송 페이지 ?	12				
2	구분 3	인종	결과를 전송반물	URL 주소 1	7분1 원	승규과를 전송	발을 URL 주소 2	구분 2	민중결과를	연杏방을 URL 주소 3	7분 3	
4		Casple //	10000 auC.CO.81/5	astronesot ise	a neps.o	WINNE MDC, CS. K)	COMPANY NO.	- X-				
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① 중앙선관위에서 안내 한 기관코드 및 기관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② 실제 시스템을 운영·담당 할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 ③ 서비스 이용기관이 서비스 하고 있는 IP 주소를 파란 글씨 부분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 한다.
 - IP주소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열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④ 서비스 이용기관의 서비스 대상의 정보를 파란 글씨 부분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구분란은 서비스 대상 URL이 게시판에 해당하는 URL주소이면 '게시판'을, 대화방에 해당하는 URL 주소이면 '대화방'을 기재한다.
 - 서비스 대상 게시판/대화방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열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⑤ 행정안전부에서 실명인증 후 인증결과를 전달받을 URL주소는 파란 글씨 부분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인증결과 URL주소는 http:// 또는 https://와 같이 Full URL로 기재한다.
 - 구분란은 인증결과 페이지가 하나가 아닐 경우 구분하기 위해 이용기관이 구분 값을 정해 입력한다.

예를 들면,

www.abc.co.kr/gesipan01.jsp 페이지에서 실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결과를 전송받는 결과 페이지는 http://www.abc.co.kr/result01.jsp 이고.

www.abc.co.kr/chat01.jsp에서 실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결과를 전송 받는 결과 페이지는 http://www.abc.co.kr/result02.jsp 로 나뉘어지는 경우

두 페이지의 URL 주소를 기재하고, 결과 페이지를 임의의 구분 값을 정해 구분란에 같이 기재해야 한다. 이 구분 값은 이용기관이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할때 mogahaRPGB 변수 명으로 값을 전송한다. 결과 페이지가 하나일 경우는 S로 기재 하고 mogahaRPGB 값도 S로 전송한다.

- 인증결과를 전송받을 URL 주소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열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 ※ 서비스 이용기관에서 작성하는 기관코드는 중앙선관위에서 부여하여 이용기관별로 제공한 기관코드를 입력
- ※ 기본정보 중 기관코드는 대상기관의 고유코드로서 작성된 코드는 추후 행정안전부 등록 사항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매핑정보로 활용됩니다.



Ⅲ. 선거실명확인지원 시스템 연계 방법

1 기술적 조치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이용 신청양식 작성방법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중앙선관위에 제출

② DB 테이블 변경

- 로그인 ID와 인증결과를 매핑 저장 할 테이블 생성 또는 수정
- 인증 받은 글이 등록 될 때 글ID (DB상의 Primary Key)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받은 인증 결과값이 매핑 되어 저장 될 수 있도록 테이블 생성 또는 수정
- * 필수사항은 아니고 이용기관에 맞게 적용하면 됨.
- ③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 시스템 연계
 - 시스템 연계를 위한 URL 주소

-https://rcen.egov.go.kr/rnchk/servlets/rnchk/chkRNMain

● 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송 할 파라미터 정보 (이용기관 ➡ 행정안전부)

변 수	설명	값	설 명	필 수
mogahaCODE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부여한 이용기관 고유 코드 값 파라 미터	코드값	엑셀신청양식의 기관코드 값	0
	이용기관에서 인증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기 위 해 결과페이지를 한 개 신청한 경우와 두 개 이상 신청한		하나인 경우	0
mogahaRPGB 경우를 구분하는 파라미터(이용기관이 전송 받을 결과페이 지가 여러 개 인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구분값으로 신청된 결과페이지에 인증결과를 전송함)		구분값	두개이상인 경우	0
mogahaPMGB	lframe 방식과 메인페이지 방식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아이프레임 (영문 대문자 I 임)	0
	귀친 파티미니	М	메인페이지	
mogahaParams	이용기관이 데이터를 결과페이지까지 유지 해야할 경우 이용 할 배열 형태의 파라미터 - 행정안전부 선거실명 시스템 URL 호출시 이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값을 전송하면 인증결과 값을 전송받는 이 용기관의 결과페이지에 값을 그대로 전달 받음			X



④ 인증 결과를 전송 받을 페이지 작성

● 행정안전부로 부터 인증결과를 전송 받기 위한 웹 페이지 작성

● 결과를 전송 받기 위한 파라미터 정보 (행정안전부 ➡ 이용기관)

변 수	설명	값	설 명	필 수
		고유키	성공	
sMogahaResult	인증 성공, 실패 결과를 전송 받을 파라미터 변수	false	인증실패	0
		error	시스템에러	
	인증 성공시에 실명인증자의 이름을 전송 받을 파라미터	이름	인증자 이름	0
Siviogariariarite	변수		실패시 빈값	
mogahaParams	이용기관이 시스템을 호출할 때 전달한 데이터를 전송 받을 배열 형태의 파라미터 변수			Х

가.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추가 또는 변경



회원정보, 게시판 1, 게시판 2 테이블은 이용기관에 이미 존재 하고 있는 테이블이고
 고유키와 사용자ID 매핑정보, 고유키와 글ID 매핑정보 테이블이 새로 추가된 테이블

🔨 중앙선거괌리위원회 🛛 🛞 행정안전부

- 고유키와 사용재D 매핑정보 테이블은 사용재D와 고유키를 Primary Key 값으로 하여 인증일시와 인증게시판 URL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의 테이블 한번 인증 받은 사용자는 다시 인증 받지 않도록 '선거실명인증' 버튼을 화면에 출력시 이 테이블에 존재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만 출력하도록 함
- 고유키와 글ID매핑정보 테이블은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시판 URL 또는 게시판 테이블명등 게시판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값과 게시판 글정보의 Key값이 되는 글ID를 Primary Key로 하여 고유키, 사용자ID 정보를 보관 하기 위한 목적의 테이블
 ※위의 ERD는 예제일 뿐입니다. 이용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연계

① Iframe을 이용한 서비스 방법

- 서비스 대상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을 추가
- 서비스 대상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을 클릭 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웹 페이지가 표시될 부분을 Iframe으로 할당
-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할당된 Iframe을 타겟으로 페이지 호출
- 행정안전부 실명인증확인지원 시스템으로 이동한 화면



PART



변수를 이용하여 전송 -전송된 글ID 등은 결과페이지에서 mogahaParams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송 받음

- DB에 저장한 후 행정안전부 선거실명확인지원 시스템으로 이동하도록 이벤트 추가 ● 행정안전부 실명인증시스템에 저장된 글ID(글의 Key값) 등을 mogahaParams 파라미터
- 서비스 대상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을 클릭 했을 경우 먼저 글을
- 서비스 대상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실명인증등록' 버튼을 추가
- ② MainPage를 이용한 서비스 방법

기타 💽 (질문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주,	세요Please!)
제 즉 신기일등 확인 사원 사수님 데수트	비열면오
이 름 테스터 전자우편 test@test.co.kr 홈페이	א http://www
본 문 ^{(선거실명) 확인 지원 시스템 테스트 입니다}	
: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 좀

'Ifrmae 영역에 행정안전부 실명인증확인지원 시스템이 호출된 게시판 화면



• '실명인증등록' 버튼이 추가된 게시판 화면

〈예시화면〉









(예시화면)

● 행정안전부 실명인증확인지원 시스템으로 이동한 화면



다. 인증결과를 전송 받을 페이지 작성

- 이용기관에서 게시판 등을 작성 할 때 사용한 개발언어를 이용하여 작성
 실명인증결과를 전송 받을 sMogahaResult 변수할당후 값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작성
 인증자 이름을 전송 받을 sMogahaName 변수 할당 후 값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작성
 이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mogahaParams 파라미터로 전송한 데이터를 전송 받을 mogahaParams 변수를 배열로 할당 후 값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작성
 인증 결과와 글ID (DB상의 Primary Key)를 매핑 하여 테이블에 저장
 글ID와 인증결과를 매핑 저장후 글목록(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이벤트 처리
 글의 목록(리스트) 화면에 실명인증에 성공한 글에 '실명인증'마크 표시
 **아래 소스는 PHP로 만들어진 게시판에 적용한 예제 소스 입니다. 기타 다른 언어
 - 로 만들어진 이용기관에서는 각자 언어에 맞게 개발 적용하셔야 합니다.

PART

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행정안전부



/* 글 목록페이지로 이동 */

\$href ="http://www.openbase.co.kr/customer/customer.php?code=\$code&type=\$data_tag";

 $?\rangle$

<script>

parent.location.href="<?=\$href ?>"

</script>



〈예시화면〉

● '인증결과에 따라 '실명인증' 표시 여부를 나타내는 화면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56	🔁 선거실명 확인 지원 시스템 테스트 🚥	두 계웅 실명인증	05-09-21	0
355	🗀 선거실명 확인 지원 시스템 테스트 📭	테스터	05-09-21	7
354	☐ MRTG _ 32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114Mbps 영 역이상 표시	박수용	05-09-21	1
353	실명인증에 성공한 경우 '실명인증' 표시와 함께 글이 등록 된 모습	2	05-09-07	23
352	🗅 Xten make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오디	05-08-30	25
351	실명인증에 실패한 경우 '실명인증' 표시가 없이 글이 등록된 모습	김기현	05-09-21	1
350	🗀 안녕하세요~ SLB와 HASH관련 질문입니다.	Lee	05-08-12	47
349	◘ Alteon184에서 동일 IP로 복수의 Real 서버 구성가 능여부	박대수	05-07-22	53
348	🗀 XTEN 검색 솔루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디	05-07-20	28
347	□ 구성문의	김기완	05-07-19	44
[1] [2][3][4][5][6][7][8][9][10]		0 글	쓰기	
제목 👤 []Q,찾기				



2 시스템 연계시 고려사항

•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장애 대응

행안부 실명확인지원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이용기관의 자체 업무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자의 글을 등록 후, 사용자가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및 안내

• 인증결과 데이터 전송 보안

실명확인지원시스템에서 이용기관에게 인증결과를 전송시 데이터보안을 위해 이용기관에서도 SSL 보안을 적용 또는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전송 페이지의 Refer를 체크 하거나 또는 별도 인증 확인하여 처리 하도록 조치

● 기관코드 불일치

이용기관이 행안부로 제출한 추가정보의 내용중 기관코드가 중앙선관위에서 부여 · 안내한 기관코드와 불일치 하여 행안부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에 등록 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은 중앙선관위에 문의(또는 홈페이지 자료참조)하여 기관코드를 수정 후 중앙선관위를 통해 행안부로 통보하여 처리

• 이용기관 추가 및 정보 변경 등록

중앙선관위 확정 즉시, 기본정보와 추가정보를 중앙선관위에서 행안부로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조치 실시

※ 이용기관의 추가정보 변경시에도 중앙선관위를 통해 행안부로 제출

• 기술적 조치 제거

- · 선거실명확인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제공되므로, 선거운동기간 이후에는 서비스가 중지 됨
- · 선거운동기간 이후에 이용기관에서 기술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확인 요청이 있을시, 인증화면 대신 서비스기간 종료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됨

• 주의사항

이용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을 글 작성자의 실명인증 용도로만 사용, 용도 외 사용 발견시에는 서비스 중단 등 조치

Ⅳ. 자체 연계 테스트 방법

1 목적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선거실명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기관이 기술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선거실명확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까지 실시하는 일련의 연계시험

2 방법 및 내용

● 테스트용 모의 데이터를 이용 실명확인서비스 대상 전 게시판 대화방에 대한 행안부 시스템 호출 실명인증 처리, 실명인증 표시등이 제대로 조치 되었는가를 시험

1) 행안부 시스템 호출

· 이용기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선거실명확인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행안부의 선거 실명확인지원 시스템의 인증 정보 입력 페이지가 호출 되는지 확인

2) 실명인증처리

- · 호출된 인증 정보 입력 페이지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입력 후 인증 버튼 클릭.
- · 실명인증 성공시 성공결과가 이용기관에 전송되어 이용기관의 성공이벤트 처리확인
- ·실명인증 실패시 실패결과가 이용기관에 전송되어 이용기관의 실패이벤트 처리확인

3) 실명인증 표시 부여

- · 실명인증에 성공한 글에 대해 "실명인증" 마크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
- ·실명인증에 실패한 글에 대해 "실명인증" 마크가 표시되지 않고 저장되는지 확인

E		
	주민등록번호	이름
	400101-1111111	테스터 1
	500101-1111111	테스터 2
	600101-2222222	테스터 3
	700101-2222222	테스터 4
	800101-1111111	테스터 5

3 참고 사항

● 기술적 미 조치(연계 테스트 미 완료 포함) 이용기관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실명확인 서비스가 원할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